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02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 의 자 : 박성훈 · 김민전 · 고동진
박충권 · 김기현 · 서명옥
추경호 · 한지아 · 김도읍
우재준 · 김성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일명 무니코틴으로 불리는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의6 등).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연초(煙草)

나. 합성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을 말한다)

다. 유사니코틴(가목 또는 나목 외에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합성물질로서 니코틴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제조된 물질을 말한다)

라. 그 밖에 나목 또는 다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용액”을 “용액 또는 담배의 원료로 사용한 화학물질”로 한다.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담배 오인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누구든지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의2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5조의6을 위반하여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과”를 “담배의 원료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담배”란 <u>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u>	1.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u> ----- ----- ----- -----.
<u><신 설></u>	<u>가. 연초(煙草)</u>
<u><신 설></u>	<u>나. 합성니코틴(원소 ·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을 말한다)</u>
<u><신 설></u>	<u>다. 유사니코틴(가목 또는 나목 외에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합성물질로서 니코틴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제조된 물질을 말한다)</u>
<u><신 설></u>	<u>라. 그 밖에 나목 또는 다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u>

2. (생략)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신 설>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신 설>

2.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_____

. _____

-----용액 또는 담
배의 원료로 사용한 화학물질-
_____.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6(담배 오인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누구든지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의2(벌칙)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제25조의6을 위반하여 담배
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
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② (생 략)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 ·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 죄에 관련된 <u>연초의 잎과</u> 담배 는 몰수한다. ② (생 략)	<u>를 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 ----- -----<u>담배의 원료와</u>----- -----. ② (현행과 같음)
---	---